

의안번호	2213157
의 퇴 인	백선희의원
회 답 일	2025.11.26.
추계번호	25D523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의3(군용차량의 관리)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군용차량의 사용 목적, 정비 상태, 내용연수, 보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군용차량의 등록, 재물조사 및 불용결정, 정비이력 및 사고이력의 기록·관리, 보안 장비 또는 군사 정보가 탑재된 차량의 분해·폐기 절차, 운용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조치,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함(제1항) 군용차량 중 병력 및 물자 수송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국방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설계·제작된 군용화물차(이하 ‘군 표준차량’이라 한다.)의 주요 구조 및 장치·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안전기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3조의3(군용차량의 관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현재 군용차량은 「군수품 관리훈령」 제36조제4항1)에 따라 차종별 내용연수를 정하여 내용연수²⁾가 도래한 품목에 대해 불용결정 하는 것을 원

1) 「군수품 관리훈령」

제36조 (불용결정 대상)

④ 내용연수가 도래한 품목은 불용결정 절차에 의해 도태 및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어 불용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으며, 해당 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기술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방부에 따르면, 군 상용차량의 내용연수는 아래 표와 같음

칙으로 하되, 기술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수명을 연장하고 있음

- 2025년 기준 정수는 표준차량 12,055대, 상용차량은 39,670대인데 비해 보유차량 수는 표준차량 8,420대, 상용차량 35,539대로 정수 대비 보유수량이 부족한 상황임
- 2025년 예산 구입분을 제외하더라도 군용차량의 보유차량 수 대비 내용연수 초과 차량은 표준차량 1,203대, 상용차량 4,394대임

[표 1] 군용차량 보유 및 내용연수 초과 비율: 2025년

(단위: 대, %)

구분		정수(편제, A)	보유차량(B)	정수 대비 보유차량 비율(B/A)	내용연수 초과 수량(C)	내용연수 초과 비율(CB)
표준차량	소계	12,055	8,420	69.8	1,203	14.3
	2½톤	7,321	5,941	81.2	599	10.1
	5톤	4,734	2,479	52.4	604	24.4
상용차량	소계	39,670	35,539	89.6	4,394	12.4
	승용차	3,959	3,889	98.2	937	24.1
	버스	5,753	5,535	96.2	251	4.5
	상용중	9,461	9,429	99.7	444	4.7
	트럭	15,132	12,276	81.1	2,314	18.8
	특장차*	5,365	4,410	82.2	448	10.2
합계		51,725	43,959	85.0	5,597	12.7

주: 1. 특장차는 특수목적용을 위한 차량으로 훈련장 등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다목적 도로관리차, 부식차 등임

2. 내용연수 초과 수량은 2025년 예산 구입분을 제외한 수량임

자료: 국방부

□ 개정안은 군수품의 정의 조항에서 물품을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물품으로 구체화하고 군용차량의 사용 목적, 정비 상태, 내용연수, 보안 수준 등을 고려한 관리체계 강화, 군 표준차량의 주요 구조 및 장치·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최근 군용차량 중 군 표준차량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차량의 노후화, 좌석 안전띠 등 안전확보를 위한 장치의 부재 등으로 파악하고, 군용차량의 성

구분	표준차량		상용차량			
	2½톤	5톤	승용차	상용중	버스	트럭
기간	18년	20년	10년	10년	11년	11년
주행거리	-	-	35만 km	35만 km	39만 km	39만 km

주: 표준차량의 경우, 훈련 중에만 사용하고 있어 내용연수와 관련하여 주행거리 한도 규정은 없음

자료: 국방부

능·안전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용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군용차량의 정비 및 안전기준 강화, 내용연수 초과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음³⁾

- 다만, 개정안에 따라 군용차량의 정비 및 안전기준 강화, 내용연수 초과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로 군용차량의 불용결정이 확대될 가능성 등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

3)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행 규정인 「군수품 관리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 안전 훈령」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다는 의견임